

#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. 2. 6.

도시환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의자: 박왕규 의원 등 7명(서보영, 고명옥, 도하석, 김장관, 강한곤, 이진환)
- 발의일자: 2025. 1. 23.
- 회부일자: 2025. 1. 23.
- 상정 및 의결: 제30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(2025. 2. 6.)

## 2. 제안이유

- 공동주택 경비원뿐만이 아니라 범위를 확대하여 미화원,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포함하고 이들의 권리 증진과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을 “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” 로 변경
- 지원대상을 “경비원” 에서 “경비원 등 근로자” 로 확대함에 따른 용어 등의 변경(안 제1조 ~ 제7조)

#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, 제65조의2
- 비용추계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5. 1. 23.~2. 4.): 의견없음

##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(전문위원 김병욱)

-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에 한정되었던 인권증진 대상에 미화원과 관리사무소 직원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,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 하기 위한 사안임.
-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” 로 변경하고, 인권증진 대상을 공동주택 경비원에서 경비원, 미화원,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확대함에 따른 각 조항별로 규정된 “경비원” 을 “경비원 등 근로자” 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였음.
-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인권보호 증진 대상을 미화원 및 관리사무소 직원까지 확대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통하여 노동자와 사용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관련 법령과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## 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약: 특이사항 없음

####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